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감정 촉탁 근거 신설〉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7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비교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9.
3. 회부연월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입증과 피해액 산정하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를 당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¹⁾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 ⑥ (생략)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8. (생략)	<u>법」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⑦ ----- ----- ----- ----- ----제6항까지----- ----- ----- -----. ⑧ 제7항----- ----- -----. 1. ~ 8. (현행과 같음)
---	---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5조²⁾ 및 제11조³⁾), 손해액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제14조의2)하고 있음.

제14조의2⁴⁾는 침해행위를 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수

2)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

량을 기초로 청구인의 손해액을 산정하거나(제1항),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액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제2항) 등⁵⁾ 손해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

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시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8. (생략)

5) 그 밖에 제3항에서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상표, 영업비밀 등의 사용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항).

그런데, 이러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를 당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사소송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35조(감정인의 지정)⁶⁾ 등에서 개별 전문가인 감정인에 의해 진행되는 ‘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41조(감정의 촉탁)⁷⁾

6)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7)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에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감정의 촉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⁸⁾ ‘감정의 촉탁’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때 유리하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현재 특정 유형의 감정⁹⁾에서 사용되고 있음.¹⁰⁾

개정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의 손해액 산정 시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감정의 촉탁’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적·경제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침해소송에서 기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기여도와 경제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공정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제시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을 기술 전문성을 가진 촉탁 대상 기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① 「발명진흥법」 제28조¹¹⁾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8) 「형사소송법」 제13장에서도 감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9)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지적측량감정 등

10)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11)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 이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¹²⁾이라는 점에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② 감정촉탁에 관한 세부절차는 「민사소송규칙」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2] ‘기술평가기관’과 ‘발명 등의 평가기관’ 비교

구 분	기술평가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지정근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의 지정 등)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평가기관 지정 등)
평가목적	· 사업화된 또는 예정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 사업화 목적의 기술이전 등에 활용	· 발명 등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기술인증, IP거래, 현물 출자 등에 활용
평가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가목) ·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다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술이전법 제2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발명진흥법 제2조)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12) 2025년 3월말 현재 35개 ‘기술평가기관’ 중 17개 기관은 ‘발명 등 평가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구 분	기술평가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사업범위	- 기술평가 -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기술이전법 제35조제2항)	- 발명 등의 평가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발명진흥법 제29조제1항)
기관현황 (’25.3월말 기준)	35개 기관 ※ 35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발명 등 평가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32개 기관

자료: 특허청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비교

구분	감정인 지정에 의한 감정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
개요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 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 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하 · 사실에 적용하여 얻는 사실판단을 법원 ·
	· 법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할 ·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인 · 감정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	· 법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할 · 경우,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전 · 문적 판단을 요청하는 것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334조 이하 · 제334조(감정의무), 제335조(감정인 · 의 지정),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 · 무),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제337 · 조(기피의 절차), 제338조(선서의 방 · 식),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제339 · 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 · 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 감정인신문), 제340조(감정증인), 제 · 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민사소송법 제341조 · 제341조(감정의 촉탁)
주체 (방식)	·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함	· 법원이 공공기관 전문기관에 감정 요청
	·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할 것인지, 감정촉탁을 할 것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 정할 사항	
절차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 따라 감정인을 지정. 단, 양 당사 · 자가 합의하여 감정인선임신청을 ·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정인은 전문적 판단을 법원에 ·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정 출석 · 하여 진술	· 감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 · 원이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에 · 감정 의뢰 · 감정기관은 전문적 판단을 법원에 · 서면으로 제출
특징	· 선서 규정 적용(민소법 제338조) · 감정인 법정출석 및 신문 가능 · 감정인 개인차원으로 감정을 진 · 행하기 때문에 공공성·객관성에 · 일부 한계	· 선서 규정 미적용(민소법 제341조 · 제1항) · 감정을 한 단체 등이 지정한 자 · 법정출석 및 감정서 설명 가능 · 기관 차원에서 감정을 진행하기 때문 · 에 공공성·객관성이 더 높다고 평가됨

자료: 특허청